

사건위임약정서[약제비]

위임인(갑)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수임인(을) : 법무법인 세승

위 당사자 간 소송 사건 등 진행에 관한 위임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사건의 표시 등]

① 사건 등의 표시

기관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건명	부당이득금
당사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상대방	국민건강보험공단

② 수임 범위

위 사건 조정 절차 종료시까지

제2조 [목적] 본 계약서는 갑이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하여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임한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 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

제4조 [착수 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금 삼백팔십오만원(₩ 3,850,000)을 지급한다. (부가세포함)

[수임료 입금 계좌: 하나은행 572-910011-43504, 예금주 법무법인 세승]

② 제1항의 착수보수는 을이 위임 사무에 착수한 후(조사, 연구, 문건 작성 등),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당사자의 포기 또는 당사자간 합의 등)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에는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을이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갑의 일방적인 위임계약 해지, 또는 제12조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을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④ 갑과 을이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을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갑을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을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착수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

제5조 [성과보수] -특약사항으로 정함-

- ① 성과보수는 다음 항목 중 계약체결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② 제1항의 경제적 이득은 판결금액(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이자포함), 또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청구취지 확장시 확장된 금액)에 대한 감액 상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④ 성공보수 지급 조건은 아래 각 항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a)을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 (b)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 (c)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9조에 따라 을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6조 [수권범위] 갑은 을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 또는 선임서에 적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제7조 [선관주의 의무]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통지 의무] 을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 의무] 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행 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자료제공 의무] 갑은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제공하기로 한다.

제11조 【비용부담】 ①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교통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갑이 부담한다.

- ② 갑은 제1항의 비용에 총당하기 위하여 금 ==== 원을 예치한다.
- ③ 출장 일당으로 1일 금 ===== 원을 비용 발생 때 지급한다.
- ④ 전항의 비용은 제2항의 예치금 중에서 총당할 수 있다.

※ **법원환급금 계좌등록** (인지, 송달료, 법원보관금 등 환급받으실 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12조 【계약해지】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제13조 【보수지급의 지체】 ①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료의 보관책임】 을은 사건처리를 위해서 갑으로부터 서류 등의 원본의 예탁을 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갖고 이를 보관하고, 사건종료 후에는 이를 신속히 갑에게 반환한다. 단, 갑이 원본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사건 종료시점 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해 해당 서류의 반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 【지급보장】

- ① 을은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갑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을은 갑이 제1항의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처리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인장조각】 이 위임계약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을은 갑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을은 사후에 인장조각 및 사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민법과의 관계】 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18조 [개인정보의 취급] ① 을이 본 사건에 관하여 갑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한다.

- (a) 본 사건의 사건처리 및 정보관리, 서면 등의 발송, 연락
- (b) 을 또는 법무법인 세승의 안내, 인사장, 연하장 등의 발송
- (c) 을 또는 법무법인 세승의 뉴스레터의 발행 및 기타 방법에 의한 정보의 제공

② 을은 본 사건의 사건처리에 필요할 경우에는 제3자(법원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약사항-
 성과보수금은 아래의 사항으로 적용합니다.
 1) 판결의 경우: 판결금[원금+지연손해금(5~20%)]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조정, 화해권고등 재판과정에서 판결 외로 종결되는 경우: 조정(화해)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위 모든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는 별도.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23. 8. .

[위임인]

갑 - 성명 : (인)
 주소 :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이메일 :

[수임인]

을 :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김선욱, 현두륜

